

공보

서울지방법원
143-5755

서 울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2가단89541 손해배상(기)

원 고 별지 목록과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김진

피 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 태평로2가 150

대표이사 배정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진호, 김진국

변호사 양진호

변론 종결 2003. 11. 18.

판결 선고 2003. 12.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부터 2003. 12.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의, 나머지 70%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일어지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데,

2001. 2. 중순경 피고의 보험상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고객 중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높은 이율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을 파악하여 그들을 상대로 피고가 판매하는 아파트담보대출상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그 대출상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목적으로, 2001. 2. 경부터 2001. 5. 경까지 사이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제공받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정보 및 피고가 자체적으로 수집·보관하고 있던 고객정보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고객으로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2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아파트 거주자'에 해당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개인신용정보주체(처리된 신용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개인)에 관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출금융기관, 대출금액 등 신용정보를 정리한 수집만전

의 자료를 피고의 보험영업본부 산하 충청지역단 등 수개의 지역단에 송부하여 지역단
산하 각 지점 및 영업소를 통하여 그 소속 보험모집인들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내지 81,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에 의하여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자신의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인 원고들로부터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원고들에 관한 대출정보 등 신용정보를 입수하고 이러한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피고의 직원이 아닌 외부인에 불과한 보험모집인들에게 배포하는 등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취득, 이용, 누설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들은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를 그 자회사 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금융기관이 소극적으로 고객들로부터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을 요청받는 경우에 한하여 그들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상품의 판매 여부를 결정하거나 소비자별로 특성화되지 아니한 금융상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홍보·판매하는

소극적인 영업 행태에서 벗어나 고객들의 신용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통하여 고객에 필요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각 고객별로 특성에 맞는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이른바 씨알엠(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 : 고객관계관리)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라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보편화되어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에,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에 관한 판단목적에 제공·이용'이라는 신용정보법 관련 규정의 의미에는 '금융기관이 소극적으로 특정인으로부터 거래관계의 설정을 의뢰받고 그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상대방을 선정하고 그와의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피고가 적법하게 입수한 원고들의 신용정보를 영업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정당하고, ②원고들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에 관한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 한국은행연합회에 그 정보가 제공되었고, 피고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한국은행연합회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신용정보를 취득하는 데에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으며, ③보험모집인들은 피고 소속의 직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보험상품의 판매 등 업무와 관련한 신용정보의 취급을 위탁받은 자이고, 피고는 보안서약 등을 통하여 보험모집인들에게 의한 신용정보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보험모집인들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신용정보법에 반하는 신용정보의 누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④가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신용정보의 이용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고객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을 소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이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부 고객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을 적기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등 도움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⑤원고들은 피고에 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가 작성·배포 이후에도 실제로 보험모집 인들로부터 피고의 금융상품을 소개받거나 피고의 대출상품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받은 적이 없고, 이미 다른 대출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에 관한 동의를 할 때에 다른 금융기관이 자신들의 신용정보를 취득·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피고에 의하여 자신들에 대한 신용정보가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신용정보의 양면성

①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특히 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물적담보 또는 인적담보에 기초한 여신의 회수 가능성이라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거래상대방의 신용거래에 관한 정보, 신용불량에 관한 정보, 신용능력에 관한 정보 등 전반적인 신용상태에 기초하여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매입 등 채권회수불능의 위험을 수반하는 여신거래를 행하는 이른바 '신용사회'의 구현을 위한 기본요소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 내에서 신용에 기초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에 관한 충분한 자료의 집적을 통한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반면에, 이러한 신용정보 중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는 경

제적 영역에서 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것으로, 그 개인은 개별 법령에 의한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헌법 제17조)'에 기하여 소극적으로는 자신에 관한 신용정보의 부당한 공개를 거부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에 관한 신용정보의 취득·이용·유통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가 없는 한 타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통제권을 가지고, 이러한 권리 를 통하여 타인에 의한 간섭이나 통제를 벗어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나. 신용정보법의 규정

(1) 입법배경

우리나라는 그 동안 신용정보의 수집·축적·관리 및 이용에 관한 통일적 법령 없이 신용정보기관을 규제단속하는 데에 중점을 둔 신용조사업법 등 개별 법령을 통하여 단편적으로 신용정보를 다루어왔는데, 이러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자유로운 생산과 유통의 미비로 신용정보제도의 확충과 신용정보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다가오는 신용평가업의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낙후되어 있는 신용정보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제고하고 개인신용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1995. 1. 5. 신용정보법을 새로이 제정하게 되었다(제14대국회 제170회 제19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14대국회 제170회 제4차 재무위원회 회의록 참조).

(2) 주요규정

(가) 신용정보법은 제2장 내지 제4장에 걸쳐 신용정보업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신용정보의 수집·조사·처리에 관한 규정, 신용정보의 유통·이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로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육성,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

를 도모하는 한편, 제5장에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신용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①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업자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함에 있어 신용정보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업무범위 안에서 수집·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한 범위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도록 하여야 하고(신용정보법 제13조), ②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아래와 같은 거래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한다), 대출·보증·담보제공·가계당좌예금 또는 당좌예금·신용카드·할부금융·시설대여 등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거래의 기간·금액 및 한도 등 정보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신용정보법 제23조, 신용정보법시행령 제2조 제1항), ③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고(금융실명법 제3조), ④개인신용정보는 개인이 서면에 의하여 다른 목적에의 제공·이용에 동의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

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 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하며(신용정보법 제24조), ⑤신용정보업자등 및 신용정보업자등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수집·조사·처리의 위탁을 받은 자의 전현직 임직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목적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그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신용정보법 제27조), ⑥신용정보업자등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신용정보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해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지고(신용정보법 제28조), ⑦신용정보법 제23조, 제24조, 제27조를 위반한 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신용정보법 제32조).

다. 신용정보의 이용 범위

이상에서 살펴본 신용정보의 성질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집적을 통한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 및 체계적 관리의 필요에 의하여 제정되었지만, 원칙적으로 신용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것으로 그 주체에 의한 등의 없이는 외부에 공개되거나 타인에 의하여 이용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유통에 관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제공된 신용정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거래관계의 기초가 되는 개인의 신용에 관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목적'으로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신용정보업자등의 다른 목

적에 신용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하여 별도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통하여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시 말하면, 신용정보법의 목적으로 언급된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 및 체계적 관리는 신용정보의 활용을 통한 기업 등 사경제주체의 경쟁력 제고나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거래에 펼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거래당사자들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신용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자등으로 하여금 일반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자신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고자 하는 개인(이하에서는 이러한 개인을 '고객'이라 한다)의 신용정보를 그의 동의하에 수집하여 이를 다른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고, 반대로 다른 신용정보업자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집·관리되는 자신의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를 그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하여 이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고객의 서면에 의한 동의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새로운 거래의 상대방을 물색하거나 이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을 상대로 새로운 거래관계의 체결을 위한 영업행위를 할 목적 등으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즉, 신용정보업자등은 신용정보주체에 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에 관한 의사가 표명되었을 때에 비로소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을 위하여 다른 신용정보업자등으로부터 새로이 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미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신용정보업자등이 법인인 경우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는 일정한 범위의 임직원에게만 신용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고 일선 영업조직과 같이 시장에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계약의 체결이나 유지에 관한 결정권이 없는 임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를 벗어난 신용정보의 위법·부당한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다만, 피고와 같은 영업주체로서는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거래관계의 설정시에 미리 상대방에게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품의 개발 및 이에 대한 가입권유 등 다른 목적을 위한 기초자료로 다른 신용정보업자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기재한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금융상품의 가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러한 신용정보의 포괄적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러한 동의의 유효성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러한 신용정보의 활용에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그러한 서면을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그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포괄적인 신용정보의 활용을 승인하는 취지일 뿐이고 다른 금융기관 등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한 관계에서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에 관한 판단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물론 피고가 제기하는 바와 같이 신용정보의 활용으로 고객의 요구(needs)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파악을 하고 그에 기초하여 적기에 고객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도모하는 영업활동의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그러한 영업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 위험성이 존재하는 이상 그러한 신용정

보의 활용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받을지 여부는 그 위험성에 관한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고객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 것이지 피고와 같은 영업주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이다.

라. 피고의 위법행위

(1) 둘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출상품의 판매를 위한 수요자의 물색 및 그에 대한 효율적인 영업활동이라는 적극적인 영업목적을 위하여 원고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원고들의 신용정보를 추출·가공하여 영업조직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이는 신용정보법에 반하는 위법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행위에 관하여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피고가 처음부터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신용정보를 수집,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보험모집인들이 비록 법적으로 피고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 보험모집업무를 위탁받은 별개의 사업자로 취급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보험모집인들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 아무개'로 인식되고 피고의 영업을 위한 조직의 일원으로 간주되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영업조직을 통하여 보험모집인들에게 원고들의 신용정보를 배포한 행위는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품판촉을 위한 신용정보의 추출·가공에서 이러한 보험모집인에 대한 신용정보의 배포에 이르는 피고의 일련의 행위는 신용정보의 위법·부당한 이용에 해당한다).

마.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의 보호에 관한 신뢰가 깨어지고 더 이상 경제거래에 따른 사생활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개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이 허용된 신용정보업자등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관한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로서의 지위를 빼앗기고 신용정보에 의한 통제를 받는 영리행위의 객체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불쾌감, 두려움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들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신용정보의 중요성, 피고의 위법행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들에 대하여 각 200만 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3.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준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3. 12. 30.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